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가단5237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권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8.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접수 제89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윤성진

별지1

목록

1. 전라북도 순창군		전 1468㎡
2. 전라북도 순창군		전 820㎡
3. 전라북도 순창군		전 314㎡
4. 전라북도 순창군		대 793 ㎡
5. 전라북도 순창군		전 512㎡
6. 전라북도 순창군		대 536㎡
7. 전라북도 순창군		전 3174㎡
8. 전라북도 순창군		임야 212㎡
9. 전라북도 순창군		전 132㎡
10. 전라북도 순창군		전 446㎡
11. 전라북도 순창군		전 1613㎡
12. 전라북도 순창군		전 883㎡
13. 전라북도 순창군		전 2896㎡
14. 전라북도 순창군		전 1286㎡
15. 전라북도 순창군		답 2945㎡
16. 전라북도 순창군		임야 13091㎡
17. 전라북도 순창군		임야 13190㎡
18. 전라북도 순창군		임야 19140㎡
19. 전라북도 순창군		전 2063㎡
20. 전라북도 순창군		전 813㎡
21. 전라북도 순창군		임야 14182㎡
(부동산 1 내지 21 말소등기할 지분: 피고 지분 3분의1)		
22. 전라북도 순창군		임야 9846㎡
23. 전라북도 순창군		임야 8400㎡
(부동산 22 내지 23 말소등기할 지분: 피고 지분 6분의1). 끝.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금으로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며 소외 B는 원고에게 보증을 받은 채무자입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2.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 (1) 소외 B[C 대표]는 원고와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및 기금의 업무방법 및 신용 보증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신용보증업무 위탁기관인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 설명서).
- (2) 위 신용보증약정계약에서 피고는 대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지연손해금,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신용보증서).

다 음

- 1. 약정일 2020. 6. 2.
- 1. 보증금액 금9,500,000원
- 1. 피보증인 B[C 대표자]
- 1. 보증번호 E
- 1. 보증기한 2025. 6. 2.
- 1. 보증방법 개별보증
- 1. 대출과목 <기운>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소상공인2

- (3) 이에 B는 위 신용보증서를 소외 업무수탁기관 D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금 1,000 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그 후, 2021. 9. 8. B의 '휴,폐업'을 원인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D 은행으로부터의 대위변제 요청에 따라 아무런 과실 없이 2022. 1. 28. D은행에게 금 9,721,072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286,390원을 회수한 후 원금에 충당하여, 현재 금 10,064,932원[대위변제잔액 9,434,682원+미수손해금 138,609원+대지급금 491,641원]의 구상권이 발생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대위변제증서).

다. B와 피고의 매매계약

원고가 B의 소유재산을 조사한 결과, B는 신용보증사고 발생(2021. 9. 8.) 이후인 2021. 9. 27.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0. 18. 전주지방법원 순창 등기소 접수 제896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라. 원고의 최고와 피고의 책임회피

이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유해성을 판단하고자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소명하여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6 협조요청서)

3.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가. 사해행위의 존재

- (1)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란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본 사안에서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는 바, 이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였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 매각대금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하여서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 (1)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바, 본 사안에서 B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수탁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대위변제책임을

지게 되었고 따라서 사전구상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2) 나아가 우리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사전구상권 이외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다. 사해의사

- (1) B는 경영하고 있던 사업장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무상황 악화 및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에 이르자, 결국 원고를 비롯하여 다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보전조치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채권자의 법적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으로 추정되는 피고(B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85. 10. 10.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하게 된 점으로 미루어 형제로 추정하였습니다)와 통모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B의 악의는 충분히 드러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그렇다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매매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사실조회 협조문서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회신을 받을 수 없었는 바, 피고가 무고한 매수인이라면 자신의 선의를 소명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

서 피고의 악의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사료됩니다.

4. 결론

- (1) 결국, B와 피고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B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것인 만큼 명백한 사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 (2)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각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